

정보기본권 조문에 대한 의견서

제안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

(담당자: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1. 소개

다음과 같이 기본권에 관한 헌법 개정 중 정보기본권에 관한 조문에 대한 의견을 아래 제안과 같이 드립니다. 본 개정 조문은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2018년 1월 8일자 보고서의 시안을 토대로 작성 하였습니다.

2. 제안하는 개정 조문의 내용

현행	개헌특위 시안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외 2개 단체의 제안
없음	제28조 ① 모든 사람은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을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자신의 정보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다. ③ 모든 사람은 정보문화향유권을 가진다. ④ 국가는 개인별·지역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독점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 및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 ① 모든 사람은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을 가진다. 누구든지 국가가 생산·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 및 공공에 공개된 정보에 대해 자유롭게 접근·취득·공유할 권리를 가지며, 이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할 수 없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생산·기록하고 보존하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모든 사람은 자신의 정보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다. ④ 국가는 개인별·지역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알권리 보장과 정보에 대한 접근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	--	--

3. 개정 조문의 제안 배경

현대사회는 기술의 발달과 맞물려 정보의 생산과 처리, 저장과 공유·확산이 급격하게 팽창하며 정보는 이제 인간 활동 일반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즉 오늘 날 한 개인의 정보에 대한 권리와 접근은 그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한데 현행 헌법에서는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소극적 권리,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정보의 개념에서 출발하는 2차적 권리만으로 정보에 대한 보편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와 국가의 의무를 포함시켜 헌법을 현대사회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4. 제안한 개정 조문에 대한 설명

개헌특위 자문위원회는 2018년 1월 8일자 보고서를 통해 헌법개정안 시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이 시안의 기본권 부분에서는 헌법에 **정보기본권** 신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¹⁾ 본 제안자는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제안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시안 특성상 권리의 개념과 보호에 대한 내용이 부족합니다. 이에 제1항을 통해서 “누구든지 국가가 생산·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 및 공공에 공개된 정보에 대해 자유롭게 접근·취득·공유할 권리를 가지며, 이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할 수 없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정보기본권이란 국가 및 공공기관이 생산,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정보와 그밖에 공공에 이미 공개되어 있는 모든 정보들에 대해 알권리와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기본권은 법률을 통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알권리의 보장과 정보에 대한 접근은 정보의 존재와 그 정보의 공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제2항을 통해 국가가 구성원들을 대리해 기능하고 행

1)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2018), 75. 참조.

정을 제공하며 수반되어 발생하는 정보들을 공식적으로 생산·기록하고 보존하여 공개하는 의무를 명시합니다.

제3항의 경우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시안의 경우에는 “모든 사람은 정보문화향유권을 가진다”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밝히고 있는 정보문화향유권개념은 유엔 사회권규약 제15조가 보장하는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와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포함하는 것²⁾으로 정보기본권의 맥락에서 지나치게 확장되어 해당 헌법 조문이 혼탁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와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에 관한 내용은 별도의 기본권 조항으로 분리하고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시안의 제3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대신 개인신상정보의 자기결정권에 해당하는 기존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시안의 제2항을 제3항으로 변경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입니다.

마지막 제4항에서는 향후 지속적인 기술의 발달이 예상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알권리와 정보접근권에 대한 정책적 노력에 대한 의무를 추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끝.

*이 의견서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사무국장
02-2039-8361
stickly@opengirok.or.kr

2) *ibid.*, 76.